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성림	7912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하성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2017.7.7.~8.8.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DB손해보험(주) 보험상품인 '참좋은상해보험' 5건(초회보험료 325천원, 모집수수료 1,482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